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8일,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
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 11. 28.) 상정/축조심사/의
결(원안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성원의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개정안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양도와 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한 종류인 손해배상청구권 중 현행법에 따른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에 따라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려는 것임.

실증특례·임시허가는 연구개발특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청구권을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원안의결함.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

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u> <u>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u> <u>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u> <u>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u> <u>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u> <u>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u> <u>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u> <u>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u> <u>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u> <u>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u> <u>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u> <u>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u> <u>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u> <u>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u> <u>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u> <u>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u> <u>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지급할 수 있다.</u> <u>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u> <u>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u> <u>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u> <u>다.</u>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